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83
----------	------

2024년 3월 4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재진 의원(찬성자 33명)
나. 제안일 : 2024년 2월 5일
다. 회부일 : 2024년 2월 7일
라. 상정일 :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 3월 4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재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세운초록띠광장의 명칭이 2014년 다시세운광장으로 재편되었으며, 현재는 '세운광장'으로 통상적 명칭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운초록띠광장'을 '세운광장'으로 현행화하여 정비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운초록띠광장”이 2014년 “다시세운광장”으로 재편되었고 현재는 통상적으로 “세운광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통용되는 광장의 명칭으로 조례 제명과 조문을 현행화하고 정비하여 조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 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u>세운초록띠광 장</u> 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세운광장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u>세운초록띠광장</u> 이란 종로구 장사동 11	1. <u>세운광장</u> 이란 -----

현행	개정안
6-3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	----- ----- -----.
2. “사용”이란 세운초록띠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이란 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나. 검토 내용

“세운광장 추진경과”

- 현행 조례는 '09.11.11일 제정·시행되었으며,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세운초록띠광장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제5조~제12조는 광장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광장 사용 관련 사항들을 규정함

- 당초 “세운초록띠광장”이 지칭하는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1)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인 “광장(경관광장, '07.1월 결정)”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09.5월 세운초록띠공원²⁾ 조성이 완료되고 같은 해 11월 현행 조례가 제정·시행 되었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2) 세운초록띠공원(세운1구역)은 기존 종묘와 남산을 연계하는 세운녹지축 1단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현대상가를 철거하고 폭원 50m, 연장 70m의 광장형태의 공원을 조성하였음

- '14.3월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광장(경관광장)”으로 결정되어 있던 세운초록띠공원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상의 공원 조성 기준 준수 및 향후 활용도 증대를 위해 조성 완료된 면적에 대하여 “공원(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³⁾함
- 이후 2016년 ‘다시세운 프로젝트’ 착수에 따라 도시재생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으로 “세운초록띠광장”은 “다시세운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세운광장”으로 불리는 공간이 재조성되었음
- '18.1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 완료 후에도 상부의 “세운광장”과 하부의 “세운홀”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23.12월까지의 사용허가 건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사용허가 현황 >

(단위: 건,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허가 건수	사용료	허가 건수	사용료	허가 건수	사용료	허가 건수	사용료	허가 건수	사용료	허가 건수	사용료	허가 건수	사용료
계	30	3,050	45	8,588	6	138	20	5,772	24	4,915	26	1,522	151	24,012
세운광장	10	1,961	7	5,289	2	68	3	2,652	8	1,393	5	456	35	11,819
세운홀	20	1,088	38	3,299	4	70	17	3,119	16	3,522	21	1,095	116	12,193

(2023.12월 기준)

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 2014.3.27.)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광 장	경관광장	종로구 장사동 116-3번지 일원	9,539	감)9,539	
신설	공 원	문화공원	종로3가 143-1번지 일원	-	증)3,748.3	3,748.3

< 세운광장 추진경위 >

- '06.10.26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7.01.25 : 도시계획시설(광장: 경관광장) 결정
- '07.05.25 :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고시
- '07.07.30 :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1단계구간: 1, 4구역)
- '08.12.17 : 현대상가 철거 및 녹지축 조성공사 착공
- '09.05.20 : 세운초록띠공원 조성 완료
- '09.11.11 :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 '14.03.27 :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광장→문화공원)
- '16.01.28 : 다시세운 프로젝트 착수 대외발표(다시세운 경사광장 조성 추진)
- '16.05.23 :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착수(한성부 중부관아터 추정)
- '16.10.21 : 문화재위원회 심의(조건부 통과) ※ 문화재 보존 추진
- '18.01.11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개정 타당성 및 추가 개정사항”

- 최초 조례 제정 이후 15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 중인 광장의 명칭으로 조례 제명과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 생각됨
- 다만, 현행 조례는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의 “세운초록띠광장”으로 지칭하는 “경관광장”을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의 “세운광장”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에 해당하며 도시계획시설 구분상 공원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던 2009년과 달리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광장(경관광장)” 이 아닌 “공원(문화공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광장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실질적으로는 “세운광장”이 “광장”의 용도로 허가·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 및 2014년에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취지와 용도, 향후 서울시 정책 방향(녹지생태도심 등)에 따른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적정성 여부와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하겠음

-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세운광장 위치”로 규정하고 있는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는 현재 폐쇄되어 사용되지 않는 지번으로 확인되었으며⁴⁾, 해당 지번은 2009년 종묘와 남산을 잇는 세운녹지축 1단계 사업 시행으로 인해 '09.12.30일자로 “종로구 장사동 2-1”로 변경되었으므로,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 맞춰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 “세운광장 위치”를 “종로구 장사동 2-1”로 현행화하여 추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세운초록띠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	1. “세운광장”이란 ----- ----- ----- ----- -----.	1. “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
2. “사용”이란 세운초록띠광	2. “사용”이란 세운광장(이하	2. (개정안과 같음)

4) 서울특별시 부동산종합정보(<https://land.seoul.go.kr/>)

변경 전 지번	변경 후 지번	변경일자	변경사유	사업명
장사동 일반 116-3	장사동 일반 2-1	2009-12-30	토지개발사업	도심남북녹지축 1단계조성사업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4. (생략)</p>	<p><u>“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3.·4. (현행과 같음)</p>	<p>3.·4. (현행과 같음)</p>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정 당시의 “세운초록띠광장”의 명칭이 현재 “세운광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명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명에 맞춰 본칙,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운초록띠광장” 용어를 “세운광장”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사용 중인 광장의 명칭으로 조례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할 수 있겠음
- 그러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공원 내 시설은 공원 관련 조례로 관리·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현행 조례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광장”의 용도로 허가·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한 조례의 현행화와 더불어 “세운광장”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적정성 여부 및 향후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소관부서 지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또한,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세운초록띠광장 위치”로 규정하고 있는 “종로구 장사동 116-3”의 지번이 '09.12.30일자로 “종로구 장사동 2-1”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 맞춰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 정 안 가 결

8. 소 수 의 견 의 요 지 : 없 음

9.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83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4년 3월 4일
제 안 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수정이유

- “세운초록띠광장”의 명칭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운광장”으로 현행화 하여 시민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조례에서 광장의 위치로 규정하고 있는 주소는 '09.12.30일 이후 변경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지번 이므로 지번 현행화를 위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를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수정)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서울특별시</u> <u>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u> <u>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u>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세운초록띠광장</u>"이란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p> <p>2. "<u>사용</u>"이란 <u>세운초록띠광장</u>(이하 "<u>광장</u>"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4. (생략)</p>	<p><u>서울특별시</u> <u>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u> <u>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세운광장</u> ----- -----.</p> <p>제2조(정의) ----- ----- -----.</p> <p>1. "<u>세운광장</u>"이란 ----- ----- ----- ----- -----.</p> <p>2. "<u>사용</u>"이란 <u>세운초록띠광장</u>(이하 "<u>광장</u>"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u>서울특별시</u> <u>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u> <u>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 ----- -----.</p> <p>1. "<u>세운광장</u>"이란 <u>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u></p> <p>2. (개정안과 같음)</p> <p>3. 4.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세운초록띠광장”을 “세운광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
2. “사용”이란 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서식]

세운광장 사용허가신청서(제5조 관련)				
행사 명칭				
사용 목적				
사용 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 시 분 (시간 분)			
주최자 또는 주최 단체의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FAX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연락 책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용인원			사용면적	m^2
행사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시장 귀하</p>				
<p>☞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 시설물 설치시)</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u> <u>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u>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세운초록띠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 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u></p> <p>2. <u>“사용”이란 세운초록띠광장(이하 “광장”이 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3. 4.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u> <u>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세운광장</u>----- ----- -----.</p> <p>제2조(정의) ----- -----.</p> <p>1. <u>“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광 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u></p> <p>2. <u>“사용”이란 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 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 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 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3. 4. (현행과 같음)</p>